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·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1.(생략)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1.(현행과 같음) <u>12. CG클래스 수익증권 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1.(생략) <신설> ②~⑤(생략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1.(현행과 같음) <u>12. CG클래스 수익증권</u> ②~⑤(현행과 같음)
제40조(보수) ①·②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1.(생략)	제40조(보수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1.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<u>12. CG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9.8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
제42조(환매수수료) ① (생 략) ② 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A클래스 · C1클래스 · C2클래스 · C3클래스 · C4클래스 · C5클래스 · Ce클래스 · W클래스 · I클래스 · S클래스 수익증권 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2. (생 략) ③ (생 략)	제42조(환매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A클래스 · C1클래스 · C2클래스 · C3클래스 · C4클래스 · C5클래스 · Ce클래스 · W클래스 · I클래스 · S클래스 · <u>CG클래스</u> 수익증권 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